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시: 2020. 3. 31.(화), 10:00
2. 장소: 본관 1층 대회의실
3. 참석자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인원	8	차미희, 박인휘, 정혜중, 박영미, 유제욱*, 오희아, 남상택, 이정화 * 위임장 제출(수임자: 정혜중)	신태섭(간사)
불참인원	4	정연화, 김우정, 송희준, 장남수	

4. 안건

- 제1호의안: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제2호의안: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5. 개회선언

- 가. 간사는 제6기 대학평의원회 일곱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리다.
- 나. 회의 시작에 앞서 간사는 2020년에 새로 위촉된 평의원들을 소개하다. 총학생회장과 일반대학원 학생회장이 2020.1.1.일자로 새로 선출됨에 따라 총학생회장 오희아, 일반대학원 학생회장 김우정 평의원이 학생평의원으로 위촉되었음을 알리다. 이어 교수평의회 의장 및 부의장(선출)이 2020.3.1.일자로 새로 선출되고 기존 교수평의원 2인이 사임함에 따라 전체 교수평의원 4인을 보궐평의원으로 위촉하게 되었음을 안내하고, 교수평의회 의장 차미희(사회과교육과), 교수평의회 부의장(선출) 박인휘(국제학전공), 정혜중(사학과), 박영미(의학과) 평의원을 소개하다.
- 다. 간사는 정연화, 김우정, 송희준, 장남수 평의원이 불참하였으며, 유제욱 평의원이 정혜중 평의원을 수임자로 하여 위임장을 제출하였음을 알리고 성원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하다.

6. 안건 심의 및 논의

가. 심의사항

□ 제1호의안: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1) 간사는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의 일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2020.2.29.일자로 우정원 의장과 신하운 부의장이 해촉되어 이번 회의에서 제6기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함을 알리다.
- (2) 간사는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 제102조의4 및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평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을 1명씩 두도록 되어 있고,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선출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평의원들에게 의견 제안을 요청하다. 참고로 작년에는 의장의 경우 의장 후보를 호선으로 추천, 재청 받은 후 만장일치 동의를 통해 선출하였고, 부의장의 경우 2명의 후보를 호선으로 추천 받아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안내하다.
- (3) 정혜중 평의원은 교수평의회 의장인 차미희 평의원을 의장으로 추천하고, 남상택 평의원이 재청, 박인휘 평의원이 동의하다. 간사는 평의원들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고 참석한 평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차미희 평의원이 제6기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다.
- (4) 이정화 평의원은 박인휘 평의원을 부의장으로 추천하고, 정혜중 평의원이 재청하다. 간사는 다른 추천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 평의원의 만장일치 동의로 박인휘 평의원이 제6기 대학평의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다.
- (5) 의장으로 선출된 차미희 평의원은 전체 평의원들에게 우리 학교 각 구성원의 대표로서 책임과 소신을 갖고 대학평의원회에 임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전하며, 앞으로 구성원 전체가 조화로우며 화합을 바탕으로 의견을 조정하여 동의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하다.

□ 제2호의안: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 (1) 의장은 제2호의안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 (2) 간사는 이번 대학원 학칙 개정안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에서 수여되는 박사학위를 전문학위에서 학술학위로 변경하는 내용임을 설명하다.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한국외대 등 타

교 국제대학원에서 석사는 전문학위, 박사는 학술학위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본 변경 건에 대해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재적생 및 수료생 전원에게 동의를 받았음을 안내하다.

- (3) 오히아 평의원은 재적생 및 수료생에게 동의를 받은 방식을 질의하고, 간사는 국제대학원에서 소속 학생들로부터 메일과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답하다.
- (4) 박인휘 평의원은 교무회의를 거친 안건인지 질의하고, 간사는 해당 안건이 규정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이번 대학평의원회 이후 4월 교무회의에 의결사항으로 상정 예정임을 안내하다.
- (5) 의장은 정확히 어떤 사유로 학위를 변경하는 것인지 질의하고, 간사는 4단계 BK21 사업의 신청자격이 전문학위가 아닌 학술학위로 요구되고 있어 변경하게 되었다고 답하다. 이어 서울대, 고려대 등 주요 국제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학술학위로 수여하고 있고, 본교 대다수 국제대학원 국제학과의 박사과정 졸업생들이 학문적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등 졸업생들의 진로·취업의 측면에서도 학술학위로의 변경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변경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의장은 구체적으로 변경 사유가 표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다.
- (6) 오히아 평의원은 BK21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취지를 질의하고, 간사는 BK21 사업이 대학원생 연구지원, 장학금 및 해외학회 참석 지원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프로그램이므로 본교는 연구중심대학으로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7) 의장은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해 평의원들에게 추가 의견이 있는지 묻고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답하여 개정안 심의에 통과한 것으로 확인하고 심의를 종료하다.

나. 기타사항

□ 대학평의원회 관련 중앙운영위원회 요구안 논의

- (1) 오히아 평의원은 대학평의원회 관련 중앙운영위원회 요구안(①대학평의원회 학생 의원 수 확대, ②모든 구성원 참관 및 발언 보장, ③전년도 모든 회의록 지속적 게시, ④투명한 대학평의원회를 위한 속기록 작성 및 게시)을 전달하고, 대학평의원회의 비민주적 구조 및 운영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하다.
- (2)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①, ②번 요구안은 모든 구성단위가 포함된 중요한 주제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바로 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교수, 직원, 동창, 대학발전 평의원들이 각 구성단위의 의견을 수렴해 올 것을 제안하고, ③, ④번 요구안에 대해서는 간사 및 기획처에 설명을 요청하다.

- (3) 의장은 오히려 평의원에게 어느 시점부터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오히려 평의원은 법률상 2006년부터 대학평의원회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교 대학평의원회가 시작된 시점부터 회의록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4) 기획팀장은 법적으로 회의록 게시를 의무화한 시점부터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고 답하다. 이어 이전에도 회의록 공개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어 관련하여 전 의장 및 부의장도 그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하였으나 회의록 공개가 의무화되기 이전 회의에 참여하였던 평의원들에게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전하다.
- (5) 오히려 평의원은 대학평의원회가 학내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 자문하는 기구로 회의록 게시를 통해 그 결정사항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이어 중앙운영위원회는 결정사항과 속기록을 작성, 게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학평의원회 참관이 허용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회의록 공개는 더욱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전하다.
- (6) 정혜중 평의원은 국가에서 의무화한 회의록 공개 시점은 지키고 있는 것이므로 이전 회의록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각 구성원이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다.
- (7) 의장은 법적으로 회의록 게시 의무화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기획처에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후 추가적인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하다. 이어 ④번 요구안과 관련하여 속기록 게시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각 구성단위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하다.
- (8) 기획팀장은 정확한 회의록 게시 의무화 연도를 확인한 후 전달하겠다고 말하다.
- (9) 정혜중 평의원은 이전 회의록 공개와 관련하여 당시 평의원들은 공개에 대한 인지 없이 회의에 참여하였으므로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고, 이에 대해서도 각 구성단위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제안하다.
- (10) 오히려 평의원은 ①, ②번 요구안은 모든 구성단위를 포함하는 내용이므로 구성단위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나, 회의록 공개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전하다. 법적으로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한 시점부터 회의록을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공개 의무화 이전 회의록은 열람을 신청하는 방안에 대하여 동의 의견을 표하다. 이어 총장 선출과 관련한 일정에 대해 질의하다.
- (11) 의장은 총장 선출 관련 일정은 전혀 전달된 바가 없으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회의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고, 일정이 확정되는 경우 전달하겠다고 말하다. 이어 차기 회의 시 회의록 게시 의무화 시점과 관련하여 기획처에서 설명 자료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다.
- (12) 박영미 평의원은 대학평의원회 회의록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2 5항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으므로 당시 비공개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모든 자

료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좋으나 공개 원칙을 따를 때 회의가 위축될 수 있는 문제를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의 의견을 전하다.

- (13) 오희아 평의원은 시행령에 따라 비공개할 경우 홈페이지에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발언 당사자가 비공개 요청을 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해서 논의가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하다.
- (14) 의장은 회의록 공개 관련 요구안은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아니므로 차기 회의에서 기획처 설명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의견을 나눌 것을 제안하다.

□ 차기 회의 일정 및 신규 위촉 평의원 배부자료 안내

- (1) 간사는 차기 회의로 결산 자문을 위한 정기회가 4월에 개최되어야 함을 알리고, 회의자료에 제시된 일시(안) 중 평의원들의 가능 일정을 확인하다. 불참한 평의원들의 일정 조사 후 정기회 일정을 확정하여 안내하기로 하다.
- (2) 간사는 2020년 신규 위촉된 평의원들에게 위촉장과 함께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 등의 자료를 배부하였음을 안내하고 확인을 요청하다.

7. 폐회선언

의장은 안건 심의 종료를 알리고 폐회 선언하다.

2020년 3월 31일

의 장 차 미 희

차미희 (인)